

『구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지연 의원 외 7명

2. 제안이유

생산·소비·유통 등의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절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기본방향 및 다른 조례와의 관례(안 제3조, 제4조)
- 시장 등의 책무 및 집행계획의 수립(안 제5조, 제6조)
-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(안 제8조)
- 재정지원(안 제9조)
-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~ 제1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,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9조, 제12조, 제13조, 제20조, 「에너지법」 제2조제1호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,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 4. 21. ~ 4. 28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」은,
 - 생산·소비·유통 등의 과정에서 자원을 최대한 순환 이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해 집행계획, 자원순환 통계조사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써,
 - 자원의 재활용, 폐기물의 처리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기에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